시행일자	2020. 02. 13.

이 사 회 규 정

스튜디오 드래곤 주식회사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4조(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② 의장의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눈다.

② 정기이사회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의장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각 이사 또는 감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회일의 7일 전일까지 각 이사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9조(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관련 법규 및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산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9)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10)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2) 현금. 주식. 현물배당 결정(정관에 의해 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4) 이사의 보수
   (15)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6)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2) 공동대표의 결정
   (3)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4)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
   (5) 이사회 내 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6)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7)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8)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9)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10) 분할, 분할합병, 흡수합병 및 신설합병의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
(11) 분기배당의 결정
(12)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리업무의 범위
(13)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14) 준법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등

3. 재무에 관한 사항
(1)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상의 타 법인출자, 출자지분의 처분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6) 신주 발행
(7)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
(10)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11)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의 차입
(12)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이상의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13)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14) 자기주식의 소각
(15) 연간 10억 이상 기부금 지출

4. 기타
(1) 상법 제 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제 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승인
(2) 이사의 경업(競業) 승인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8에 의한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승인
(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5)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 부의되는 사항이 아닌 여타 사항에 관하여는 대표이사가 이를 결정·집행한다.

③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이사회 부의사항 중 일부를 제11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령,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권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보고 받은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12조(이사 아닌 자의 출석)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회사 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이사회 또는 각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3월 8일부터 제정/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2월 13일부터 개정/시행한다.